

제10호

행정명령

주정부 윤리 교육 의무 개정

2011년 1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제3호에 따라 Executive Chamber 공무원 및 직원, 뉴욕주 정부기관 커미셔너, 뉴욕주 정부기관 카운슬, 뉴욕주 정부기관 윤리 감찰관에게 윤리 교육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뉴욕주 주민은 윤리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며 투명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음에 따라, 본 행정부는 정부 부문의 윤리 기준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공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 공무원 및 직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1년 1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제3호를 폐지한다.

A. 정의

1. “주정부 기관”은 공무원법(Public Officers Law) 74조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주정부 공무원 및 직원"은 공무원법 74조의 "주정부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B. 윤리 교육

1. 주정부 서비스에서 새롭게 참여한 주정부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근무 시작 60일 내에 라이브 윤리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이러한 교육에는 공무원법 73조, 73-A조, 74조, 주민 서비스법(Civil Service Law) 75-b조 및 107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주정부 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은 본 명령에 따라 초기 교육 세션 이후 3년마다 라이브 윤리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Executive Chamber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본 명령에 따라 초기 교육 세션 이후 2년마다 라이브 윤리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주정부 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은 본 명령에 따라 모든 라이브 교육 세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교육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는 개인 파일에 보관됩니다.

5. Executive Chamber 및 각 주정부 기관의 윤리 담당관은 각기 운영하는 한편 공공 윤리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를 조정하며, 적용 대상자가 본 행정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규 교육 세션을 운영해야 합니다.

C. 처벌

본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위반을 구성한 개인에 대하여 담당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고 또는 기타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한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